

댓글도 방치하면 범죄?

: 혐오 표현을 담은 온라인 댓글을 방치한 정치인의 책임에 관한 Sanchez v. France 사건

정재도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1. 시작하며

하루에도 수많은 댓글이 올라오는 Facebook 등 소셜미디어에 제3자가 혐오 표현이 담긴 댓글을 남긴 경우에 그 계정의 소유자도 형사 책임을 져야 할까? 자신이 작성하지도 않은 댓글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을 그는 예측할 수 있었을까? 특히 유권자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정치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책임의 부과가 되지 않을까?

프랑스의 정치인 줄리앙 산체스(Julien Sanchez,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제3자가 올린, 혐오 표현이 담긴 댓글로 인하여 프랑스 법원으로부터 3,000유로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프랑스 법원의 판결이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CHR) 제10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유럽인권법원에 제소하였다. 그러나 유럽인권법원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글에서는 이 판례를 통하여 앞서 제기한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사건의 사실관계

청구인은 사건 당시에 프랑스 남부 옥시타니(Occitanie) 지방 보케르(Beaucaire)시 시장이자 총선에서 님(Nîmes)시의 국민전선(Front National, FN) 소속 후보자였다. 그리고 F.P.는

유럽의회 의원이자 님(Nîmes)의 제1부시장으로서 청구인의 정치적 반대자 중 한 명이었다. 2011년 10월 24일, 청구인은 그가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일반에게 공개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담벼락’에 F.P.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짧은 글을 게시했다.

“국민전선(FN)이 예정된 시간에 새로운 전국적 웹사이트를 개설한 반면, 님(Nîmes)의 국민운동연합(UMP) 소속의 유럽의회 의원인 F.P.를 생각하니, 오늘 개설될 예정이었던 그의 웹사이트 첫 페이지에는 운명적인 ‘000’이 떠 있네요.”¹⁾

청구인의 게시물에는 이후에 약 15개의 댓글이 게시되었고 그중에는 아래와 같은 S.B.의 댓글(①)과 L.R.의 댓글(②)도 있었다.

① “이 위대한 남자는 님(Nîmes)을 알제(Alger)²⁾로 바꿔 놓았군. 케밥 가게와 이슬람 사원이 없는 거리가 없어. 마약상과 매춘부들이 판을 치는군. 그가 신세계 질서 샤리아의 수도로 브뤼셀을 택한 것도 놀랄 일이 아니지... UMPS(국민운동연합과 사회당) 덕분에 비행기 표와 호텔비를 아낄 수 있겠어... (중략) 프랑크에게 감사를 그리고 레일라(Leila)에게 키스를... (중략)”³⁾

② “도심 곳곳에 시샤 바(chicha bars)⁴⁾와 히잡을 쓴 여성... 이것이 바로 이른바 ‘로마의 도시’라는 님(Nîmes)의 실체이다... UMP와 PS(프랑스의 주요 정당인 대중운동연합과 사회당)가 무슬림과 연합하고 있다.”

“수년째 롱바흐 거리(Rue des lombards)에서 무슬림이 운영하는 마약거래... 제네럴 르클레르 거리(Avenue general leclerc)에서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또 다른 마약거래가 있거나, 불량배들이 하루 종일 경찰의 개입 없이 중·고등학교 앞에서 마약을 팔고 있다. 아를 도로(Route d'arles)에서는 신호등에 멈춰 있는 ‘백인’들의 차에 끊임없이 돌맹이를 던지고 있다...

1) 여기서 ‘000’은 접속자 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알제(Alger)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알제리의 수도이다. 1962년 알제리의 독립과 함께 수도가 되었으며, 프랑스 문화와 아랍 아프리카 문화의 접점으로 문화의 중심지이다. 송호열, (2006), 〈세계지명 유래사전〉, 성지문화사 참조.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697237&cid=51736&categoryId=51736> (2025. 9. 8. 검색)

3) 여기서 브뤼셀은 유럽연합(EU)의 본부가 위치한 도시로, 유럽 통합과 서구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장소이다. 따라서 “신세계의 질서 샤리아의 수도로 브뤼셀을 택했다”는 표현은 무슬림 인구의 증가와 문화적 변화로 인해 유럽연합과 같은 서구 사회가 이슬람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Google AI, (2025), Gemini (2.5 Flash) [Large language model], <https://gemini.google.com> (2025. 9. 8. 검색)

4) 시샤 바(chicha bar)는 물담배(hookah)를 피울 수 있도록 특화된 카페 또는 바를 의미한다. 시샤는 물담배를 자청하는 용어로, 특히 중동 지역에서 즐겨 사용되는 이름이다. Google AI, (2025), Gemini (2.5 Flash) [Large language model], <https://gemini.google.com> (2025. 9. 8. 검색)

님(Nîmes)은 랑그독 루시용(languedoc roussillon) 지방의 불안한 수도이다.”

“웃기는 소리(prout). 경제 개발 담당 선출직이라니. 웃기네 lol) 할랄 경제 개발이라니. 감베타 대로(Boulevard gambetta)와 레퓌블리크(이슬람) 거리(Rue de la republique(islamique))에서”

2011년 10월 25일, F.P.의 동거인인 레일라 티(Leila T.)⁵⁾는 이 댓글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이를 ‘인종차별적인 것이라 생각했으며, 특히 자신의 이름(마그레브 지역의 뉘앙스를 풍기는 이름)을 동거인의 정책과 연관시킨 발언에 대해 모욕감을 느껴 S.B.를 찾아가 항의하였다. 이에 S.B.는 그녀가 떠난 직후 즉시 댓글을 삭제했다.

2011년 10월 26일, 레일라 티는 인종차별적 발언을 이유로 청구인과 S.B., L.R.을 검찰에 고소하였다. 2011년 10월 27일, 청구인은 자신의 페이스북 담벼락에 “댓글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권고 메시지를 올렸지만 문제가 된 기존의 댓글들은 그대로 두었다. 그리하여 S.B.의 댓글은 작성자가 스스로 삭제하였으나, 나머지 글들은 청구인의 페이스북 담벼락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12년 1월 28일, 청구인은 수사관들에게 자신은 레일라 티의 동거인인 F.P.에 맞서 님(Nîmes)에서 총선 후보로 출마했으며, 자신은 문제의 댓글들의 작성자가 아니라는 점과 S.B.의 댓글을 직접 삭제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L.R.의 댓글은 수사받을 당시에야 비로소 알았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그는 매일 자신의 페이스북 담벼락을 확인하지만, 1,800명 이상의 ‘친구들이 24시간 내내 댓글을 게시할 수 있기 때문에 댓글 수가 너무 많아 자주 읽지는 않는다는 점과, 논란이 된 댓글에는 살인이나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으며, 자신이 보기에는 모두가 시민의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글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끝으로, 청구인은 수사받기 며칠 전에 자신의 페이스북 담벼락을 비공개로 전환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님(Nîmes)의 경죄 법원(tribunal correctionnel)⁶⁾은 문제의 발언들이 출신이나 특정 민족, 국가, 인종 또는 종교에 대한 소속 여부를 이유로, 특히 레일라 티를 포함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또는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을 진행하였다.⁷⁾

5) 유럽인권법원은 레일라 티(Leila T.)는 S.B.의 댓글에 등장하는 레일라(Leila)라는 이름으로 지칭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였다. CEDH, 15 mai 2023, n° 45581/15, *Sanchez c. France* (GC), p. 6.

6) 경죄법원(tribunal correctionnel)은 절도, 사기, 횡령, 중상해 등의 경죄(délits)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법원이다. 경죄법원은 10년 이하의 금고형, 벌금 등을 선고할 수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2008). <프랑스 법령용어집>. p. 695.

7) CEDH, 15 mai 2023, n° 45581/15, *Sanchez c. France* (GC), pp. 5–8.

3. 적용 법률 및 프랑스 법원의 판결

1) 1심 법원의 판결과 적용 법률

2013년 2월 28일 님(Nîmes)의 경죄 법원은 1심에서 청구인과 S.B., L.R.에게 무슬림 신자들에 대한 혐오 표현과 폭력 선동 행위를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고, 각 4,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청구인과 S.B.는 사인당사자(partie civile)⁸⁾인 레일라 티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1,000유로를 연대하여 지불하라는 판결을 추가로 받았다. 한편, 법원은 검찰이 요구한 피선거권 박탈의 형벌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청구인에 대해 적용한 법률은 첫째,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이하 ‘1881년 7월 29일의 법률’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8항이다. 제23조 제1항은 “인터넷과 같은 전자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범죄 선동을 한 자에 대한 처벌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4조 제8항은 인터넷과 같은 전자 통신 수단 등을 이용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그들의 출신, 또는 그들이 특정한 민족, 국가, 인종 또는 종교에 속하거나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 혐오 또는 폭력을 선동한 자는 1년의 징역과 45,000유로의 벌금 또는 이 두 가지 중 하나의 형벌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전자 통신 수단을 이용한 혐오 표현과 폭력 선동에 대한 처벌의 근거와 처벌 범위를 규정하였다.

둘째, ‘시청각 통신에 관한 1982년 7월 29일의 제82-652호 법률’(이하 ‘1982년 7월 29일의 법률’이라 한다) 제93-3조가 청구인에게 적용되었다. 이 조문은 ‘단계적(또는 연속적) 책임(responsabilité en cascade)’ 제도를 도입하여, 온라인 공중 통신 서비스에 글을 작성한 자 외에 해당 서비스의 발행인이나 공동발행인, 제작자 등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다만 “인터넷 이용자가 온라인 공중 통신 서비스를 통해 공중에게 전파한 메시지의 내용으로부터 일정한 범죄가 비롯되었을 때, 발행인 또는 공동발행인은 그 메시지가 온라인에 게시되기 전에 실제로 그 내용을 알지 못했거나 또는 그가 내용을 안 즉시 해당 메시지를 신속하게 삭제하였을 경우에는 정범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법원은, 댓글에서 언급된 표현들은 무슬림을 완벽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무슬림들”을 “마약상과 매춘부”와 동일시하고 또 이들을 “하루 종일 마약을 파는 불량배들”, 또는 “백인들의 차에 돌팔매질을 하는” 사람들과 동일시한 것은, 그 의미와 파급력 면에서 실제이든 추정이든, 무슬림 신자 집단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조장하려는 목적을 보인다고 판단하였다.⁹⁾ 또

8) 프랑스는 형사소송에서 범죄로부터 입은 피해의 복구를 주장하기 위하여 공소의 제기를 강제하거나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형사소송에 참여하는 범죄피해자를 partie civile(사인당사자)라고 한다. 한국법제연구원 (2008), 〈프랑스 법령용어집〉, p. 580.

9) CEDH, 15 mai 2023, n° 45581/15, *Sanchez c. France* (GC), p. 8.

한 법원은 2011년 9월 16일 헌법재판소 판결¹⁰⁾을 근거로 ‘1982년 7월 29일의 법률’ 제93-3조를 해석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작성한 메시지를 대중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공개 통신 사이트의 제작자(producteur)는 메시지가 게시되기 전 그 내용을 인지했음이 입증되거나,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 내용을 인지한 즉시 이를 제거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메시지의 내용에 대한 형사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개 통신 공간을 직접 개설하고 운영한 ‘제작자(producteur)’로서, 수사 도중에도 문제의 댓글을 계속 방치했으며 이를 신속하게 중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댓글이 작성자가 아니더라도 정범의 자격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결론을 내렸다.¹¹⁾

2) 항소심 및 상고심 판결

청구인이 항소하자 2013년 10월 18일, 님(Nîmes) 항소법원은 청구인의 유죄에 대한 1심 판결을 인정하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벌금을 3,000유로로 감액했다. 또한, 청구인에게 항소심의 소송 비용 및 경비 명목으로 레일라 티에게 1,000유로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1982년 7월 29일의 법률’ 제93-3조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참고하여, 국민전선 소속의 의원이자 공인인 청구인이 의식적으로 자신의 페이스북 담벼락을 공개하고 그의 친구들이 댓글을 게시할 수 있게 허용한 점, 이러한 자발적인 행위로 인해 그가 게시된 댓글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점, 정치인으로서의 그의 신분은 일반인보다 더욱 중요한 경계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 청구인이 논란이 된 발언들의 확산을 신속하게 중단시켰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문제가 된 댓글들은 표현의 자유와 양립 가능하다고 주장하여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함으로써 의도적으로 해당 댓글들을 자신의 담벼락에 유지한 점 등을 유죄 인정의 주요한 근거로 제시하였다.¹²⁾

이후 청구인은 유럽인권협약(ECHR) 제10조 위반을 주장하며 프랑스 대법원(Cour de cassation)에 상고하였다. 그는 논란이 된 댓글들은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혐오, 폭력 선동의 기준에 미치지 않았으며, 인종차별의 위험만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댓글들처럼 의미와 파급력 모두에서 특정 종교를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거부감이나 적대감, 혐오 또는 폭력을 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동죄가 성립하며, 문제가 된 글들은 유럽인권협약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표현의

10) Conseil constitutionnel, 16 septembre 2011, n° 2011-164 QPC.

11) CEDH, 15 mai 2023, n° 45581/15, *Sanchez c. France* (GC), pp. 8-9.

12) CEDH, 15 mai 2023, n° 45581/15, *Sanchez c. France* (GC), p. 10.



자유에 대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제10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의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¹³⁾

4. 유럽인권법원의 판결

1) 유럽인권법원 소재판부의 판결

유럽인권협약 제10조 제1항에서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0조 제2항은 표현의 자유의 행사에는 의무와 책임이 따르므로, 표현의 자유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영토의 일체성이나 공공의 안전, 무질서 및 범죄의 방지, 보건과 도덕의 보호, 타인의 명예나 권리의 보호, 비밀리에 얻은 정보의 공개 방지, 또는 사법부의 권위와 공정성의 유지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형식, 조건, 제약 또는 형벌에 따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여 표현의 자유의 제한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인 산체스는 프랑스 법원의 판결이 유럽인권협약 제10조를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음을 이유로 유럽인권법원에 제소하였다. 그는 ‘1982년 7월 29일의 법률’

¹³⁾ CEDH, 15 mai 2023, n° 45581/15, *Sanchez c. France* (GC), pp. 10–11.

제93-3조를 근거로 자신이 제작자(producteur)로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예측가능성이 없다는 점과 댓글 작성자의 신원이 확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자신의 형사 책임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그의 활동은 정치적 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촉진하기 위해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유럽인권법원 제5소재판부는 문제의 댓글들은 무슬림 공동체를 차별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제한은 법률에 규정된 것이고, 정당한 목적을 추구했으며,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조치였기 때문에 유럽인권협약 제10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¹⁴⁾ 또한 제5소재판부는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의 행사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만든 공개적인 소통 공간에 대한 통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한다고 밝혔다. 즉, 재판부는 청구인이 자신의 페이스북 담벼락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개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페이스북 담벼락의 소유자로서의 특정한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¹⁵⁾

2) 유럽인권법원 대재판부의 판결

이후 사건은 대재판부(Grande Chambre)로 회부되었다. 청구인은 프랑스 법원의 법률 해석 및 적용과 제작자로서 유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는 예측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재판부는 이러한 예측가능성이 ‘행위의 결과가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예측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법률상 ‘제작자’ 개념은 프랑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해 확정된 개념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제작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 문제가 된 댓글의 위험성에 대한 사전 통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¹⁶⁾ 이전의 다른 판결에서 유럽인권법원은 제3자가 게시한 명백히 불법적인 댓글을 지체없이 삭제하지 않은 경우에 인터넷 뉴스 포털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었다. 해당 사건에서 유럽인권법원은 불법적인 댓글에 대하여 피해자나 제3자의 통지가 없더라도 인터넷 뉴스 포털에게 법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보았는데,¹⁷⁾ 대재판부는 청구인의 사건에서 이와 다른 결론에 이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대재판부는 프랑스 법원의

¹⁴⁾ CEDH, 2 septembre 2021, n° 45581/15, *Sanchez c. France* (Cinquième Section).

¹⁵⁾ Global Freedom of Expression Columbia University, *Sanchez v. France* (GC), <https://globalfreedomofexpression.columbia.edu/cases/sanchez-v-france-gc/> (2025. 09. 05. 검색)

¹⁶⁾ Global Freedom of Expression Columbia University, *Sanchez v. France* (GC).

¹⁷⁾ CEDH, 16 juin 2015, n° 64569/09, *Delfi AS c. Estonie* (GC).

법률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보았다.¹⁸⁾ 이어서 대재판부는 프랑스 정부가 개입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에 대해 타인의 명예나 권리의 보호, 공공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¹⁹⁾

마지막으로, 대재판부는 페이스북 댓글에 대한 개입이 유럽인권협약 제10조 제2항이 규정한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개입인지를 검토하였다. 대재판부는 선거운동 중인 정치인의 페이스북에 게시된 댓글이라는 점과 댓글의 내용과 표현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제의 댓글은 혐오 표현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청구인으로서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 외에는 사전 필터링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댓글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제작자인 청구인에게 댓글에 대한 면책을 인정하면 혐오 표현과 폭력 선동은 물론, 거짓과 허위 정보 등이 조장되거나 부추겨질 위험이 있다며, 정치인인 청구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유권자들의 불법적인 행동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댓글의 위협에 대한 경계의무도 더 크게 인정된다는 프랑스 법원의 추론에 동의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어느 정도까지 경계의무를 부담해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 적절하고 필요할까? 대재판부는 표현의 자유의 제한은 그 대상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책임의 수준에 따라 의무의 정도와 제한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선출직 의원이나 정치인은 발언의 무게나 영향력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이 일반인보다 크기 때문에 요청되는 경계의무의 정도도 필연적으로 더 크다고 보았다. 그런 점에서 대재판부는 이 사건에서의 청구인이 문제의 댓글을 알았음에도 그것을 신속히 삭제하거나 관련 댓글들을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경계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재판부는 청구인이 댓글 작성자들을 대신해서 기소된 것이 아니라, 별개의 독립적 법률 체계와 책임에 따라 기소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결국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유럽인권법원 대재판부는 13대 4의 투표 결과로, 청구인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개입은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으로서 유럽인권협약 제10조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법적 책임과 형사 유죄판결은 충분한 이유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²⁰⁾

18) CEDH, 15 mai 2023, n° 45581/15, *Sanchez c. France* (GC), Résumé juridique, pp. 1-2.

19) CEDH, 15 mai 2023, n° 45581/15, *Sanchez c. France* (GC), p. 53.

20) CEDH, 15 mai 2023, n° 45581/15, *Sanchez c. France* (GC), Résumé juridique, p. 2-5; Global Freedom of Expression Columbia University, *Sanchez v. France* (GC).



5. 글을 마치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정치인이자 선거 후보자로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의 대화와 담론을 형성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혐오 표현이 담긴 댓글이 문제가 되자 자신의 법적 책임을 부인하였다. 비록 청구인이 댓글의 작성자는 아니지만, 그 댓글은 청구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형성된 정치적 영향력의 한 부분이 되었으며, 댓글의 방치로 인하여 그 영향력이 계속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청구인의 법적 책임은 댓글 작성자의 책임과는 별개이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서 프랑스 법원과 유럽인권법원은 프랑스 법률상 ‘제작자’의 개념과 책임의 기준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프랑스 대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프랑스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확정된 개념인 ‘제작자’는 ‘사전에 정해진 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온라인 통신 서비스의 개설을 주도한 사람’을 뜻한다.²¹⁾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게시물 내용이 문제되는 경우, 제작자 등의 기소 여부를 게시물 작성자의 기소 여부에 구속시키지 않는 것을 ‘기소의 독립성 원칙(principe

²¹⁾ Conseil constitutionnel, 16 septembre 2011, n° 2011-164 QPC, cons. 5.

d'indépendance des poursuites)²²⁾이라고 하는데, 이에 따라 프랑스 대법원은 문제의 글이 게시되기 전에 제작자가 그 내용을 인지했거나,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면 제작자가 그 내용을 인지한 즉시 삭제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에만 '제작자'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다.²³⁾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제작자는 게시물의 합법성을 스스로 판단하고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받게 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그러나 선거운동 등 정치적 목적과 관련하여 게시물의 영향력이 증대될 수 있는 경우, 제작자는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의무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목적과 수단 사이의 비례성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해 준다. 

22) CEDH, 15 mai 2023, n° 45581/15, *Sanchez c. France* (GC), p. 14.

23) Cour de cassation, Chambre criminelle, 31 janvier 2012, 11-80.010. <https://www.legifrance.gouv.fr/juri/id/JURITEXT000025379193/> (2025. 9. 9. 검색)